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 
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79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## 2. 제안이유

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‘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’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 조항 삭제(안 제4조 제1항)
- 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(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3호)

-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-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- 해당 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신설
- 해당 구역 지번 및 면적 신설

다. 골목형 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 
 서식 신설(안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, 안 제4조 제3항  
 별지 제2호서식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.
- 조례안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, 그 중 19개 자치구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기준을 삭제하였음.

-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‘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’(2022. 1. 11)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신규 지정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.
-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서울시 자치구 조례현황 1부.

3. 전통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인정 기준 1부. 끝.

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**

[시행 2023. 10. 31.] [법률 제19823호, 2023. 10. 31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**

[시행 2023. 10. 19.] [대통령령 제33769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**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**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0. 8. 11.]

## 소상공인기본법

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2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붙임 2

##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

자치구명	상인 1/2동의 구역표시도면	상인회 회칙,명부	토지·건물 소유주 1/2 동의 <sup>1)</sup>	구역 지번과 면적 <sup>2)</sup>	구역 전체상인 명부 <sup>3)</sup>
금천구	○	○	○		
종로구	○	○			
중구	○	○			
용산구	○	○			
성동구	○	○			
광진구	○	○			
동대문구	○	○			
중랑구	○	○	○		
성북구	○	○			
강북구	○	○			○
도봉구	○	○			
노원구	○	○			
은평구	○	○	○	○	
서대문구	○	○		○	○
마포구	○	○			
양천구	○	○		○	○
강서구	○		○		
구로구	○			○	○
영등포구	○	○			
동작구	○			○	○
관악구	○	○			
서초구	○	○			
강남구	○		○		
송파구	○			○	○
강동구	○	○	○		

1) 25개 자치구 중 19개는 조례 개정으로 삭제

2)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(2,000㎡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) 적합 여부 확인용

3) 구역 전체 상인 중 2분의 1이상 동의 여부 확인용

구 분		전통시장	상점가	골목형 상점가
근거 법령		전통시장법	유통산업발전법	전통시장법
인정방법		시·군·구에서 인정 후 공고	별도 인정절차 없음	시·군·구의 조례로 지정
인정 기준	구역 면적	구역면적 <u>1,000㎡ 이상</u> 으로 <u>일정수 이상의</u> <u>점포가 있는 곳</u>  * 판매·영업시설과 편의시설 (주차장 화장실 물류시설 등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	구역면적 <u>2,000㎡ 이내</u> 에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<u>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</u> <u>밀집*한 곳</u>  * 밀집도(예): 구역면적 4,000㎡인 경우 60개 이상, 6,000㎡인 경우 90개 이상	구역면적 <u>2,000㎡ 이내</u> 에 <u>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</u> <u>밀집한 곳</u>  * 밀집도(예): 구역면적 4,000㎡인 경우 60개 이상, 6,000㎡인 경우 90개 이상
	업종 및 점포수	<u>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</u> <u>점포 50개 이상</u>	<u>도·소매업 또는 용역업</u> <u>점포 30개 이상</u>	<u>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</u> <u>이 운영하는 점포</u> <u>30개 이상*</u>  * 점포수 기준(30개 이상)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
	점포 비율	<u>도·소매점포 50% 이상</u>	<u>도·소매점포 50% 이상</u> (산업부 업무처리 기준)	<u>해당 없음</u>
	기타	- 상인,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/2 이상의 동의  *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/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- 신청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 였고 도시·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	-	기타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함
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		사용 가능	사용 가능	사용 가능

\*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, 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